

중대재해 사례

슬래브 거푸집 해체 작업 중, 각재에 맞아 사망

< 사고개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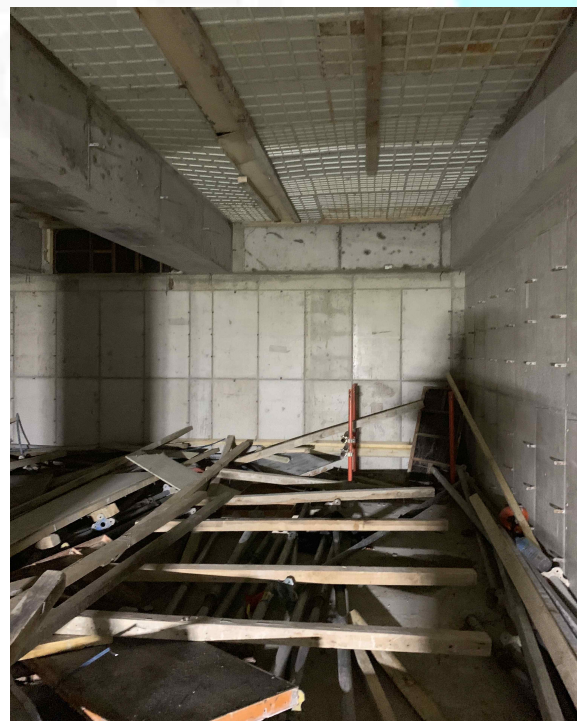
2019.06.00., 재해자는 (주)□□건설 소속 근로자로 인천광역시 ○○○구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슬래브 거푸집 해체 작업 중, 장선재를 받치고 있던 파이프 서포트의 방향을 조절하다가 각재(장선, 멍에)가 낙하하여 등 부위를 타격하여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사망함



[사진 1] 재해상황도



[사진 2] 재해발생 전



[사진 3] 재해 직후 전경

① 사고발생원인

○ 조립·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미실시

- 사업주는 기둥·보·벽체·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낙하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

○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미실시

- 사업주는 약 188kg의 거푸집을 해체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미작성

② 동종사고 예방대책

○ 조립·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철저

- 사업주는 기둥·보·벽체·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낙하·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해체하거나 또는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.

○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

- 사업주는 약 188kg의 거푸집을 해체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,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

가.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

나.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

다.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

라.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

마.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